

2025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사항 -

1.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과 2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구 분		지원 대상	비고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급기업(필수)	제조현장 산업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컨소 시엄 <필수>
공동연구 개발기관	①도입기업(필수)	제조현장 산업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	
	②도입기업(필수)		
위탁연구개발기관(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	

* 컨소시엄 : 공급기업(주관) + 도입기업(공동, 2개사 이상 필수 참여) + 대학·연구기관 등(선택)

2.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세부과제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R&D	7월 23일	8월 8일 ~ 8월 22일	9월	10월

3.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기반 산재예방 R&D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지원목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기반 산재예방 R&D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
- (지원규모) '25년 16.5억원 내외 (20개 과제 내외)
 -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분야) 4대 지원분야 內 자유공모 <별첨1> 참고
- (지원조건) 최대 2년, 6.6억원 이내

지원형태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컨소시엄형	최대 2년, 6.6억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 >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5.10.1~‘25.12.31)	금액	82.5	3	24.5	27.5	110
	(비율)	(75%)	(2.4%)	(22.3%)	(25%)	
2차년도 (‘26.1.1~‘26.12.31)	금액	330	11	99	110	440
	(비율)	(75%)	(2.5%)	(22.5%)	(25%)	
3차년도 (‘27.1.1~‘27.9.30)	금액	247.5	8.5	74	82.5	330
	(비율)	(75%)	(2.6%)	(22.4%)	(25%)	
합 계		660	22.5	197.5	220	880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025.10.1.)로부터 2025.12.31.까지로 설정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개발기간	'25.10.1.~'25.12.31. (3개월)	'26.1.1.~'26.12.31. (12개월)	'27.1.1.~'27.9.30. (9개월)

○ 선정평가 결과, 정부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일괄협약에 따라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총 개발기간으로 신청

□ (필수적 성과목표) 2개 지표 중 1개 지표 이상 필수 반영 필요

특화 성능지표	전체 성능지표 중 차지 비중 [수정불가]
· 고용노동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품목 신규 등록	15%
· 도입기업 외 1개 기업 이상 기술개발 결과물(산업재해 예방 장비 또는 솔루션) 보급	15%

3. 신청자격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 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 ② 공장등록증명서를 보유한 제조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컨소시엄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과 최소 2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으로 필수 구성
 -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을 받은 경우 컨소시엄 참여가능(컨소시엄 협약서 필수 제출)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신청가능(O)				신청가능(O)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위탁연구 개발기관
A기업 [공급기업]	B기업 [도입기업]	C기업 [도입기업]	D기업 [도입기업]	A기업 [공급기업]	B기업 [도입기업]	C기업 [도입기업]	D대학 [비영리]
신청불가(X)			신청불가(X)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위탁연구 개발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위탁연구 개발기관		
A기업 [공급기업]	B기업 [도입기업]	C대학 [비영리]	A기업 [공급기업]	B기업 [도입기업]	C기업 [중소기업]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별첨2> 참고
- (졸업제 제도 미적용) 본 사업은 졸업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임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 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별첨3> 참고

4.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과제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 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연구실운영비) 영리기관이 연구실운영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붙임2)을 제출하여 평가위원회 승인 필요

*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구실 환경유지기기 관련 비용(사무용품은 제외)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위탁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이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 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을 채용하여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합산하여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연구 개시 시점 일괄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여 정부지원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 금액 전액(既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 시 기존 기관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금 비율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분	기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신청·접수기간 : 2025년 8월 8일(금) ~ 8월 22일(금),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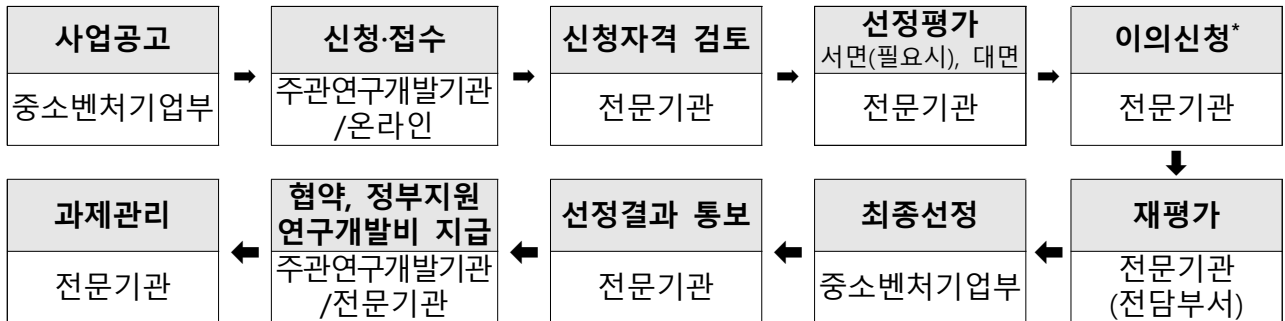
-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활용

-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검색 후 시스템 내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이 필요하며, 기관대표자 및 과제참여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 ◇ 신청서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공고 및 양식 확인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2025년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지원분야 내용을 확인하고 세부품목 중 선택하여 신청
- ◇ 온라인 시스템 작성 후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 → 오류 발생시 해당 안내에 따라 수정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삭제 불가)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서면평가(필요 시)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정 및 방법의 적정성,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기술성·사업성 중심으로 평가

$$\text{서면평가 평점} = \frac{\text{서면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사전검토

-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선정(대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text{종합평점} = \frac{\text{선정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참조

< 평가지표 주요내용 >

구분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40)	· 기술개발 목표, 내용의 수준, 구체성 및 정부지원필요성	15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20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사업성 (20)	·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 방법, 일정,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10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기술개발 부합성 (10)	· 산재예방 안전장비 및 솔루션 보급계획의 적정성	5
	· 기술개발 결과물의 산재예방 효과 및 산재발생 감소효과 구체성	5
기술개발 보유역량 수준 (25)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 (연구팀 구성 계획,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역량 및 수행 역할 등)	15
	· 본 과제 수행 관련 특허, 논문 등 기술적 기반	
	·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10
자금집행계획 (5)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합계		100

지원과제 확정

- 선정(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 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5. 10.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본문1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본문2	○
②	중소기업 확인서		○
③	(도입기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④	(도입기업) 공장등록증명서		○
⑤	공급기업-도입기업 간 컨소시엄 확약서		○
⑥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⑦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⑧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약서		○
⑨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⑩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4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⑪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⑫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⑬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하여 인정(추가 제출 불가)		○

7.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납부방식)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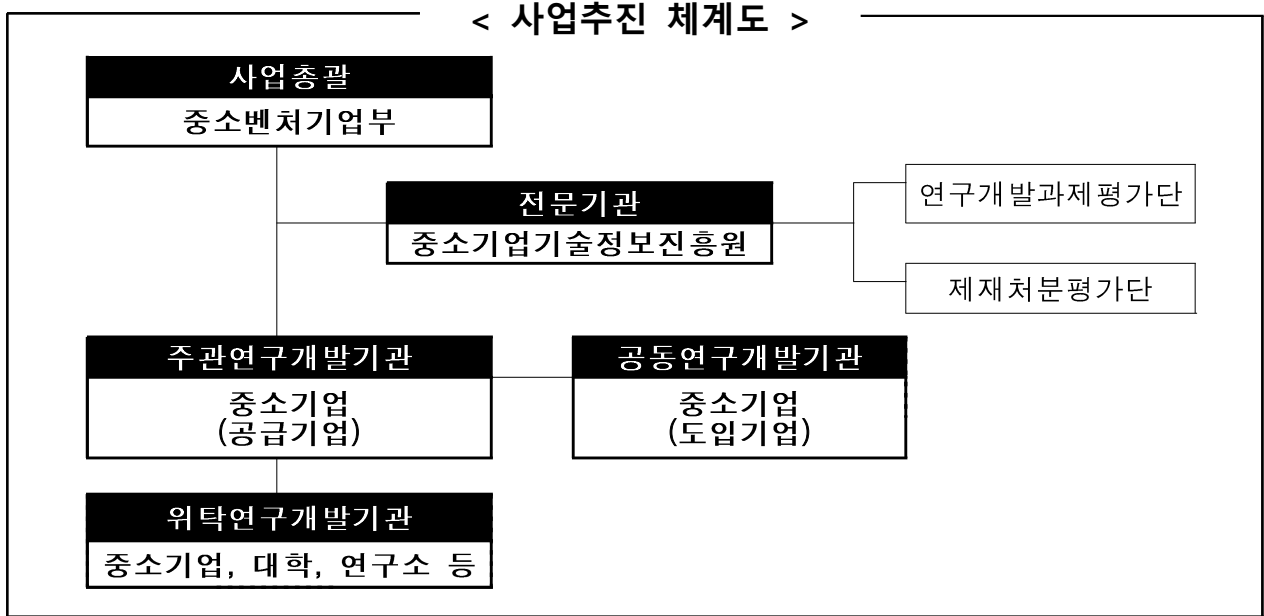
-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기술료" 검색>>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 법령확인: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국가R&D법령.지침>>"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 검색>>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 ③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도입기업)은 기술료 면제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참여 권장)

9.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연락처(이메일)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1fqd

참고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감점

-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대사항별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단, 공통가점 중 성과창출 강화 항목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우수'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 되었으나,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여 장관 포상을 받지 않은 기업 포함	2점	* 표창장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점	표창장 등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이 신청한 과제 * 조기완납 기준: 기술료 납부 1~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 단,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1점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생태계 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과제 수행 종료 후, 기술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은 상기 가점 외에 선정평가시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지표"점수를 최고점으로 부여함(단, 선행연구와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연번	가점 사항	가점	확인
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②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④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 (감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감점 >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 (유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